

국내 개발자원 현황: 국내 ODA 자원현황

강승헌 (KOICA 예산팀 과장)

목 차

1. ODA 재원의 정의
2. 국내 ODA 자원현황
3. 향후 국내 ODA 자원전망

제I장

개발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제IV장

1. ODA 및 ODA 재원의 정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일반적인 정의는 OECD/DAC에서 정한 수원국 목록에 있는 국가 및 지역, 또는 다자간 개발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이다. 위의 ODA의 정의에 따라 OECD에서 정한 ODA의 세부조건으로는 ① 중앙 및 지방정부, 기타공공집행기관 등에 의한 제공 ② ODA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증진목적 ③ 증여율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¹⁾

상기의 ODA 정의에 따른 ODA 재원의 정의는 개도국 발전을 위한 자금 및 기술협력을 위한 무상, 유상, 다자원조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기타 공공기관의 예산 및 기금을 말한다.

1) 한국국제협력단, 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p27-29』

2. 국내 ODA 재원현황

1) ODA 정책수립 및 재원편성

국내 ODA에 관한 정책조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및 국제금융기구협력을 제외한 다자원조는 외교부가 주관하고 유상원조 및 국제금융기구협력에 관한 다자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²⁾ ODA 정책조정과는 별개로 ODA 재원의 심의·편성은 기획재정부(예산실)가 담당하여 복수의 심의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확정된다.

2) ODA 재원현황

□ 2011~2014년 ODA 재원현황³⁾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연평균 성장률 7.7%). 특히 2012년에 처음으로 ODA 2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2014년 정부(안) 편성결과 2조 2,583억원이다. ODA/GNI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2014년은 전체 GNI의 0.16%로 나타났다.

2014년 ODA 재원을 지원 형태별로 분류하면, 다자 ODA 재원은 6,632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8.5%(606억원) 감소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UN 정규 예산 및 PKO 예산 분담률이 2013년 전체 UN 예산의 2.26%에서 2014년 1.994%로 자연감소 한 결과이다.⁴⁾ 다자 ODA 재원이 다소 감소한 것과는 달리, 양자 ODA 재원은 1조 5,951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2.2%(1,729억원) 상승하였다. 유상 ODA 재원은 7,533억원으로 전년대비 847억원(12.7%)증가 하였고, 무상 ODA 재원편성은 8,418억원으로 2013년 대비 882억원(11.7%)이 증액되었다.

〈표 1〉 2011~2014년간 ODA 재원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안)	연평균 증가율(%)
ODA총액=①+②	18,088	20,609	21,470	22,583	7.7
① 다자	5,866	7,810	7,248	6,632	4.2
② 양자 (①+②)	12,222	12,799	14,222	15,951	9.3
① 유상	6,048	6,152	6,686	7,533	7.6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제9조

3) 2014년 데이터는 정부(안) 수치로 최종국회 심의확정 예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3.『2014년 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p20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안)	연평균 증가율(%)
② 무상	6,174	6,647	7,536	8,418	10.9
ODA/GNI 비율	0.12%	0.14%	0.15%	0.16%	-

출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각 집행 부처별 ODA 재원현황

우리정부의 2014년도 ODA 재원의 정부(안) 편성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대비 1,113억원이 증가한 2조 2,583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약 5.2% 증액 편성되었다.

무상원조를 주관하는 외교부가 1조 731억원으로 전체 ODA 재원의 47.5%를 차지하였으며,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9,170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40.6%를 차지하였다. 현행 ODA를 수행하는 29개 각 정부부처 및 위원회 가운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농촌진흥청 등 15개 부처는 전년대비 ODA 재원편성이 증가하였고⁵⁾ 외교부 및 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법무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는 전년과 동일하게 ODA 재원이 편성되었다.

〈표 2〉 2012~2014년간 각 부처별 ODA 재원현황⁶⁾

(단위: 억원)

부 처 명	12년 예산	13년 예산	14년 예산(안)	증감액
계	20,609	21,470	22,583	1,113
국회사무처	3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4	4	0
국무조정실(구.국무총리실)	65	56	66	10
기획재정부	7,382	8,026	9,170	1,144
교육부(구.교육과학기술부)	555	533	573	40
외교부(구.외교통상부)	10,836	10,907	10,731	△176
법무부	11	13	13	0
안전행정부(구.행정안전부)	244	225	234	9
문화체육관광부	50	85	107	22
농림축산식품부(구.농림수산식품부)	310	287	283	△4
해양수산부	-	17	27	10
국토교통부(구.국토해양부)	1	1	60	59

5) 국토교통부 사업 증액은 '13년도 ODA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사업을 '14년부터 ODA 사업으로 분류하여 증가하였음

6) 국토교통부 사업 증액은 '13년도 ODA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사업을 '14년부터 ODA 사업으로 분류하여 증가하였음

부 처 명	12년 예산	13년 예산	14년 예산(안)	증감액
산업통상자원부(구.지식경제부)	163	110	110	0
보건복지부	308	357	352	△5
환경부	52	79	74	△5
고용노동부	159	131	119	△12
여성가족부	59	63	62	△1
국가보훈처	1	2	2	0
방송통신위원회	83	-	-	-
미래창조과학부	-	201	206	5
공정거래위원회	2	2	2	0
국민권익위원회	1	1	1	0
관세청	23	32	34	2
통계청	7	9	7	△2
경찰청	27	14	15	1
문화재청	11	18	20	2
농촌진흥청	126	144	156	12
산림청	71	98	103	5
특허청	17	18	19	1
식품의약품안전처(구.식품의약품안전청)	0.1	1	3	2
기상청	33	36	33	△3
원자력안전위원회	6	-	-	-

출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분야별 ODA 재원 집행현황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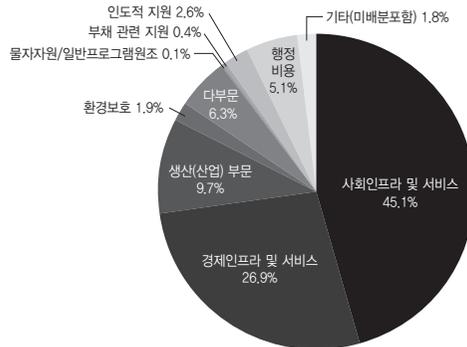
우리정부의 2008~2012년도 분야별 ODA 재원의 집행현황을 보면, 사회 인프라 서비스, 경제 인프라 서비스 및 생산·산업 부분의 ODA 집행액 평균이 전체의 81.7%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MDGs Goal 2,4,5번에 해당하고 개도국의 개발 수요가 가장 높은 사회 인프라 서비스분야에 평균 45.1%로 가장 많은 ODA 재원이 투입 되었다. 세부 집행내역은 교육 15.1%, 보건 11.9%, 인구정책·생식보건 0.8%, 수자원·위생 7.7%, 공공행정·시민사회 8.1% 및 기타 사회 인프라 1.5%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인프라 서비스에 뒤이어 개도국의 경제발전 인프라구축을 위한 경제 인프라 서비스 분야는 평균 26.9%씩 재원이 집행되었으며, 교통·물류 16.3%, 통신 6.7%, 에너지 3.4%, 금융·재무 서비스 0.2% 및 비즈니스·기타 서비스에 각각 0.2%의 재원을 집행하였다. 생산·산업분야는 ODA 재원 집행액의 평균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어업 6.7%, 산업광업건설 1.6%, 통상정책·조정 1.3% 및 관광분야에 0.1%를 집행하였다.

7) 2014년 데이터는 정부(안) 수치로 최종국회 심의확정 예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국ODA 분야별 지원실적(<http://www.odakorea.go.kr>)

〈그림 1〉 2008~2012년간 각 분야별 ODA 자원배분



출처: 수출입은행 ODA 통계

3) 각국의 ODA 자원 증감현황

대한민국을 비롯한 OECD/DAC 회원국의 2009~2012년 ODA 자원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평균 증가율이 -0.25%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ODA 재원이 증가한 국가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14국이며, 그리스 및 스페인 등 12국은 최근 4년간 ODA재원이 감소하였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한 국제경제위기로 2009년 OECD/DAC 국가의 ODA 재원은 전년대비 6.9%가 감소하였다. 2010년 및 2011년은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미국발 경제위기를 서서히 회복하여 ODA재원 증가율을 선도하였으며 전년대비 6%대의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전통적 공여국인 OECD/DAC 소속 유럽국가 대부분의 ODA재원이 감소되어 2012년 OECD/DAC 국가의 ODA재원은 2011년 대비 7.0% 감소하는 등 각 공여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ODA재원의 증감 폭이 넓게 나타났다.

〈표 3〉 2009~2012년간 각 국가별 ODA 자원 증감률 현황

(단위: %)

국가	2009	2010	2011	2012	4년간 평균
대한민국	1.7	43.8	12.8	17.1	18.87
호주	△6.5	38.5	28.7	10.5	17.80
스위스	13.4	△0.4	32.6	△0.9	11.16
뉴질랜드	△11.1	10.7	23.9	7.4	7.71
캐나다	△16.6	30.4	4.7	4.0	5.62
영국	△1.9	15.7	6.0	△1.3	4.63
노르웨이	1.9	7.1	8.8	△0.0	4.44

국가	2009	2010	2011	2012	4년간 평균
폴란드	0.6	0.8	10.4	5.0	4.20
미국	9.1	5.3	1.4	△1.0	3.68
핀란드	10.7	3.3	5.5	△6.1	3.33
스웨덴	△3.9	△0.3	23.6	△6.4	3.24
프랑스	15.5	2.5	0.6	△6.9	2.95
일본	△1.4	16.4	△1.7	△3.1	2.55
룩셈부르크	△0.1	△2.9	1.6	5.6	1.07
벨기에	9.4	15.1	△6.5	△18.0	0.00
포르투갈	△17.3	26.6	9.1	△19.9	△0.39
덴마크	0.2	2.2	2.1	△7.3	△0.69
독일	△13.6	7.5	8.5	△7.0	△1.14
체코	△13.8	6.0	10.1	△12.4	△2.56
슬로바키아	△17.9	△2.2	16.7	△9.2	△3.16
네덜란드	△8.1	△1.1	△0.2	△12.9	△5.58
오스트리아	△33.4	5.8	△8.0	0.1	△8.87
이탈리아	△32.2	△9.1	44.4	△39.0	△8.98
아일랜드	△24.3	△11.0	2.1	△11.4	△11.16
아이슬란드	△28.9	△16.5	△11.1	1.6	△13.70
그리스	△13.6	△16.4	△16.3	△23.7	△17.53
스페인	△4.1	△9.6	△29.9	△53.3	△24.23
연도평균	△6.9	6.2	6.7	△7.0	△0.25

출처: OECD/DAC 통계(2013년 OECD/DAC에 가입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체코, 폴란드 포함)

3. 향후 국내 ODA 재원전망

1) ODA 재원의 정의 및 현황

ODA 재원의 정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개도국 사회 경제발전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과 기술협력을 위한 예산 및 기금을 말한다. 우리정부의 ODA 정책조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소관 하지만, ODA 재원의 편성은 기획재정부(예산실) 담당하는 이원적 체제로 운영된다. ODA 재원의 집행은 29개의 정부부처 및 위원회에서 각 부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고유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OECD/DAC 국가들의 최근 4년간 ODA 자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발생한 미국 및 유럽의 경제위기에 따라 증감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 OECD/DAC 가입 후 ODA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 ODA/GNI 대비 0.16%까지 ODA 재원을 확대하였다.

2) 향후 ODA 자원전망

당초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2010.10)⁹⁾ 및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 포럼(HLF-4/2011.11)에서 2015년까지 ODA/GNI 비율을 0.25%까지 올리기로 목표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의견이¹⁰⁾¹¹⁾¹²⁾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개도국 발전을 위한 ODA 지속 확대라는 정책기조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¹³⁾,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공여국이 외부적 경제 불안요소에 기인하여 ODA 재원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정부는 지속적으로 ODA 재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ODA 재원의 지속 확대”를 외교분야 국정과제로 집중관리하고 있으며¹⁴⁾,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점진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ODA 재원의 증감 전망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 수립 시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3) 혁신적 ODA 자원 발굴논의

타국의 ODA 자원감소 경향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확대기조에 있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ODA 재원은 국가재정을 수반하는 전통적 의미의 ODA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ODA 재원은 필연적으로 교육, 복지 또는 국방과 같은 국내 재정수요와 상충되어, 국가재정 감축 상황에서의 ODA 재원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축소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ODA 재원의 특성상 성과보다는 투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비판¹⁵⁾이 있는 등 ODA 재정의 확대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최근 ODA 공여국 정부,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는 ODA 자원확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ODA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도로 혁신적, 융복합적 ODA 자원발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통적 ODA를 탈피한 혁신적 자원마련을 위하여 사업자 보증제도 및 혁신적 민관협력 사업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 제4.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총괄 p348』

11) 국회 예산정책처. 2013.『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p270』

12) 국회 입법조사처. 2014.『이슈와 논점 제77호-Post 2015와 한국 ODA정책의 개선과제』

13) 제1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1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제133번

15) 윌리엄 이스틀리. 2011.『세계의 절반구하기 p290-293』

사업자 보증제도란, 개도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사업법인(SPC: Special Project Company)이 자금을 차입 할 때, 개도국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 하거나 금리가 높게 형성되지 않도록 ODA 재원을 투입하여 SPC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해주는 제도이다. 사업자 보증 제도를 통하여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개도국 인프라 구축사업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어, 비교적 적은 ODA 재원을 발판으로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레버리지(leverage)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혁신적 민관협력 사업이란 기존의 일방향의 개발협력 CSO 예산지원 사업이 아닌 CSO, 학계 및 기업과 다양한 사업모델을 공동추진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와 소통·융합하여 개도국에 가장 필요한 분야에, 최적화된 전달방법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하여 ODA 재정 부담을 낮추고 ODA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개도국에 진출한 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사업을 확대하여 ODA 재정투입이 기업 및 사회와 공동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모델을 생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중기 ODA 자원전망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우리 정부는 2009년 OECD/DAC 가입이후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0-2015년 간 ODA 재원의 확대계획을 수립하였고, 동 기간 동안 타 공여국의 자원축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우리정부는 ODA 재원의 양적 확대되었던 제1차 기간 동안의 경험 및 교훈을 발판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이 집행되는 2016-2020년은 과감한 ODA 자원 확대보다는 점진적인 자원확대와 동시에 집행체계 개선 및 지출 효율화를 통한 ODA 재정집행의 질적 확대를 목표로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1차 기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대한 예측이 불분명하고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높아져 2차 기간 동안의 자원 증가율은 1차 기간을 상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한정된 ODA 재원에 국한되지 않고 개도국 개발협력사업을 최대한 확대 할 수 있도록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혁신적 자원발굴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한국국제협력단. 201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개정판』, 한올아카데미.
- 윌리엄 이스틀리. 2011. 『세계의 절반구하기』, 미지북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3. 『2014년 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p20』, 국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총괄』, 국회.
- 국회 예산정책처. 2013.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국회
- 국회 입법조사처. 2014. 『Post 2015와 한국 ODA정책의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77호, 국회.
- OECD/DAC. 2012. 『ODCE/DAC Peer Review 2012-KOREA』, OECD.
- 수출입은행 ODA 통계사이트: <http://www.edcfkorea.go.kr/edcf/info/oda/system.jsp>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이트: <http://www.odakorea.go.kr>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제IV장